

# 사 천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        |         |
|--------|---------|
| 선<br>람 | 기 관 의 장 |
|        |         |

제275호 2011. 5. 6 (금)

|  |    |
|--|----|
| <b>조 례</b>   |    |
| ○ 사천시 조례 제950호 사천시 예방접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            | 2  |
| ○ 사천시 조례 제951호 사천시하수종말처리시설의관리운영에관한조례<br>전부개정조례 ----- | 7  |
| <b>규 칙</b>   |    |
| ○ 사천시 규칙 제489호 사천시 조례·규칙심의회규칙 일부개정규칙 -----           | 15 |
| ○ 사천시 규칙 제490호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 19 |
| <b>훈 령</b>   |    |
| ○ 사천시 훈령 제246호 사천시 소속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br>세부지침 -----  | 21 |
| <b>공 고</b>   |    |
| ○ 도로의 노선지정에 관한 공고 -----                              | 27 |

|        |  |  |  |  |  |  |  |  |  |
|--------|--|--|--|--|--|--|--|--|--|
| 회<br>람 |  |  |  |  |  |  |  |  |  |
|--------|--|--|--|--|--|--|--|--|--|

발행 : 사천시    편집 : 기획감사담당관실    ☎ 831-2215 · FAX 831-6011

# 사 천 시 공 보

제275호(2)

## 조 례

### 사천시 조례 제950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예방접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5월 6일

사 천 시 장 정 만 규

### 사천시 예방접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예방접종업무를 수탁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 대상 예방접종)**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예방접종 대상 질병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디프테리아
2. 폴리오
3. 백일해
4. 홍역
5. 파상풍
6. 결핵
7. B형간염

# 사 천 시 공 보

제275호(3)

8. 유행성이하선염

9. 풍진

10. 수두

11. 일본뇌염

12.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감염병

② 제1항의 예방접종 지원대상자는 접종일 현재 사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만12세 이하의 소아로 한다.

**제3조(의료기관의 선정)** 시장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의사가 의료를 행하는 곳에 한한다) 또는 의원 중 예방접종업무 수행 능력 등을 고려하여 위탁할 의료기관을 선정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위탁계약 체결 등)** ① 시장은 제3조의 수탁 의료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할 경우, 당해 의료기관의 장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수탁 의료기관은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에 규정된 위탁계약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위탁계약에 관한 사항 중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고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시장은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의료기관과의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한 때

2. 위탁 의료기관이 제4조제2항에 따른 위탁계약조건을 어겼을 때

3. 기타 위탁계약에 규정된 사항을 어겼을 때

**제6조(업무감독)** 시장은 필요할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 의료기관의 예방접종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예방접종수가)**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하위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예방접종수가를 따른다.

# 사 천 시 공 보

제275호(4)

② 제1항에서 정하지 않은 예방접종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 결정을 요청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8조(예방접종 비용 상환신청 및 지급)** ① 의료기관은 예방접종 당일 시장에게 비용 상환신청을 한다.

② 시장은 비용 상환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결정 지급한다.(단, 신생아일 경우 30일 이내)

③ 시장은 의료기관의 예방접종 비용 상환신청이 허위, 과다신청 등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시는 그 사유를 들어 지급불가 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9조(비용 상환 이의신청)** 의료기관은 비용 상환 불가 통지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30일 이내 예방접종등록시스템을 통해 질병관리본부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0조(자체 재원의 조달)** 시장은 예방접종 민간위탁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별도의 자체 재원조달 계획을 수립·책정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275호(5)

[별지 1]

##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

|     |                 |  |   |        |  |
|-----|-----------------|--|---|--------|--|
| 제1조 | 계약목적            | “을”은“갑”으로부터 위탁받은 예방접종업무에 대하여 정기 또는 임시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   |        |  |
| 제2조 | “을”             | 의료기관명  |   | 요양기관번호 |  |
|     |                 | 요양기관종별   |   | 표시과목   |  |
|     |                 | 주소(소재지)  | 경남 사천시  |        |  |
|     |                 | 전화   |   | 전자우편주소 |  |
|     |                 | 대표자  |   | 주민등록번호 |  |
|     |                 | 면허종별   |   | 면허번호   |  |
|     |                 | 의료정보시스템  | <input type="checkbox"/> 사용 ※사용 시 업체명 : _____<br><input type="checkbox"/> 미사용 |        |  |
| 제3조 | 위탁계약조건          | 별지 뒷면 참조   |   |        |  |
| 제4조 | 신의성실 및 위탁계약의 해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갑”과 “을”은 본 계약서에 의거 위탁 예방접종업무의 효율적인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여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li> <li>▪ “갑”은 “을”이 ①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한 때 ②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위탁계약조건을 어겼을 때 ③과실로 인해 예방접종업무가 이행될 수 없을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li> </ul> |   |        |  |
| 제5조 | 계약기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위탁계약서는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간 유효한 것으로 한다. 단, 사천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2년 이내로 할 수 있다.</li> </ul> <p style="margin-left: 20px;">[보건복지부 고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준용]</p>   |   |        |  |

“갑”과 “을”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정기 및 임시 예방접종업무를 위탁수행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본 위탁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 구비서류 : 접종비용 상환용 통장사본 1부

20    년    월    일

<갑> 기   관   명 : 사 천 시 청  
           대   표   자 : 사 천 시 장 (서명 또는 날인)

<을> 의료기관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날인)

# 사 천 시 공 보

제275호(6)

## < 위탁계약조건 >

“을”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고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의 예방접종업무 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 ③ 위탁 의료기관의 의료인(의사)은 사업 실시 이전 또는 실시 후 예방접종업무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 ④ 예방접종등록시스템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과거예방접종력을 조회하고 접종기록을 등록하며 비용 상환을 신청한다.  
※ 접종기록 등록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예방접종 기록의 보존 및 보고 등) 및 동법시행규칙 제23조(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의 작성 및 보고)에 의거
- ⑤ 예방접종기록 등록 및 비용 상환 신청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의료기관용사업지침’을 준수한다.
- ⑥ 개인의 과거접종력 조회와 정보 활용 시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에 따라 진료 이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275호(7)

## 사천시 조례 제951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하수종말처리시설의관리운영에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5월 6일

## 사 천 시 장 정 만 규

### 사천시하수종말처리시설의관리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

사천시하수종말처리시설의관리운영에관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전부 개정한다.

제명 “사천시하수종말처리시설의관리운영에관한조례” 를 “사천시 공공하수도  
위탁관리에 관한 조례” 로 한다.

### 사천시 공공하수도 위탁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시에서 설치·운영하는  
공공하수도의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하수”란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발생한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물  
질이 섞이어 오염된 물(이하 “오수”라 한다)과 건물·도로 그 밖의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지하수를 말한다. 다만, 농작물의 경작에  
따른 것은 제외한다.
2. “분뇨”란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개  
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하수도”란 하수와 분뇨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하수관

# 사 천 시 공 보

제275호(8)

거·공공하수처리시설·공공처리수재이용시설·분뇨처리시설·중수도·배수설비·개인하수처리시설 및 그 밖의 공작물·시설의 총체를 말한다.

4. “공공하수도”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도를 말한다. 다만, 개인하수도는 제외한다.
5. “공공하수처리시설”이란 하수를 처리하여 하천, 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에 방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처리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을 말한다.
6. “공공처리수재이용시설”이란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생활용수·공업용수 등으로 다시 이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처리시설 및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7. “분뇨처리시설”이란 분뇨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8. “차집관거”란 맑을 때 하수나 비올 때 일정량의 하수를 차집하여 하수처리장으로 배제하기 위한 관거를 말한다.
9. “수탁자”란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5조에 따라 선정된 수탁기관을 말한다.
10. 그 밖의 용어는 법에서 정한 것을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공공하수도의 위탁 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과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명칭 및 위치)** 공공하수도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5조(운영관리 등)** ① 공공하수도는 시장이 운영관리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필요하면 「하수도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에 따른 관계 전문기관에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탁 시에는 위탁조건, 위탁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의무 등 위탁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시장과 수탁자 사이에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하고,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수탁자는 공공하수도 관리에 관하여 시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공공하수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 사 천 시 공 보

제275호(9)

정할 수 있다.

⑤ 시장은 공공하수도 운영관리에 필요하면 수탁자에게 업무상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위탁사무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탁자에게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수탁자의 선정)** ① 수탁자의 선정은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5조의 규정을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6조에 따른 수탁기관선정위원회에서 적합한 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공공하수도의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시장의 사전승인 없이 공공하수도 시설물의 구조를 변경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액에 상응하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공공하수도 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의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공공하수도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매년 일정 기간을 정하여 시설 전반에 대한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시행하고 시설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수탁자는 공공하수도의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등 관리의 잘못 때문에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제8조(위탁업무)** 수탁자에게 위탁할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수처리구역 내 차집관거 및 중계펌프장 유지관리
2. 공공하수처리시설, 공공처리수재이용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의 유지관리
3. 수질원격감시체계(TMS) 유지관리

# 사 천 시 공 보

제275호(10)

4. 기기의 유지관리 및 조정수 관리
5. 기자재 정비, 수선 및 물품 보관관리
6. 공공하수도에 관한 일반 사무관리
7. 유입수, 방류수의 수질검사(시험, 분석, 유량측정 등) 및 결과의 기록·보존
8. 처리수의 수질개선, 악취저감 방법 등의 연구개발
9. 법에 따른 공공하수도 유지관리 사항
10. 그 밖에 공공하수도시설 유지관리를 위해서 시에서 요청하는 업무

**제9조(자산투자비의 부담)** ① 위탁자산의 가치를 증진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는 시설 공사 또는 개·보수공사와 천재지변 또는 민원에 따른 긴급한 시설보완 공사, 그리고 기자재·비품 등 고정자산을 취득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시가 부담한다. 다만, 수탁자가 이행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수탁자가 제1항의 비용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매회계년도 개시 90일 전까지 시장에게 예산편성 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에 따른 긴급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비용을 직접 부담한 후 청구할 수 있다.

**제10조(협약의 해지 또는 해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협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공공하수도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변경 하였을 경우
2. 공공하수도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수탁협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4.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5. 그 밖의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때에는 수탁자는 지체 없이 수탁재산을 반납하여야 하고, 해당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 연고권 등을 주장할 수 없다.

**제11조(위탁관리 비용 등)** ① 제5조제2항에 따른 공공하수도 위탁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하수도특별회계에서 부담하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분뇨처리시설의 위탁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일반회계에서 부담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275호(11)

② 처리시설 운영관리 위탁에 따른 비용은 연간 총액 금액으로 정하되, 정부가 공표하는 도매물가 상승률 범위에서 시장의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위탁협약 첫해에는 수탁자와 계약한 총액을 적용한다.

③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수탁업무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주민복지향상)** ① 수탁자는 공공하수도를 관리함에 있어 시설물 주변 주민의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공공하수도 관리에 따른 부대시설을 주민에게 개방하는 등 서비스 개선에 노력하여야 하고, 공공하수도는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경제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사천시분뇨처리장(시설)의민간위탁운영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275호(12)

[별표]

## 공공하수도의 명칭 및 위치(제4조 관련)

| 명 칭           | 위 치                | 비 고 |
|---------------|--------------------|-----|
| 삼천포공공하수처리시설   | 사천시 사등동 114-1      |     |
| 삼천포분뇨전처리시설    | 사천시 사등동 114-1      |     |
| 사천공공하수처리시설    | 사천시 사남면 방지리 200    |     |
| 사천분뇨전처리시설     | 사천시 사남면 방지리 200    |     |
| 곤양공공하수처리시설    | 사천시 곤양면 대진리 856    |     |
| 서포공공하수처리시설    | 사천시 서포면 구평리 150    |     |
| 용현공공하수처리시설    | 사천시 용현면 송지리 1018-4 |     |
| 곤명공공하수처리시설    | 사천시 곤명면 정곡리 883-2  |     |
| 두량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 사천시 사천읍 두량리 1514-4 |     |
| 대산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 사천시 정동면 장산리 434-8  |     |
| 학촌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 사천시 정동면 학촌리 126-3  |     |
| 대곡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 사천시 정동면 대곡리 479-4  |     |
| 능화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 사천시 사남면 우천리 531-1  |     |
| 용치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 사천시 용현면 용치리 485-1  |     |
| 환덕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 사천시 곤양면 환덕리 500-4  |     |
| 금성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 사천시 곤명면 금성리 399-2  |     |
| 마곡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 사천시 곤명면 마곡리 410-7  |     |
| 초량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 사천시 곤명면 초량리 664-1  |     |
| 중촌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 사천시 서포면 자혜리 723    |     |
| 금진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 사천시 서포면 금진리 325-1  |     |
| 서구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 사천시 서포면 외구리 855-1  |     |
| 내구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 사천시 서포면 내구리 80-8   |     |

# 사 천 시 공 보

제275호(13)

| 명 칭            | 위 치                | 비 고 |
|----------------|--------------------|-----|
| 다평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 사천시 서포면 다평리 721-13 |     |
| 구포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 사천시 서포면 자혜리 434-2  |     |
| 신수도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 사천시 신수동 526        |     |
| 늑도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 사천시 늑도동 28-7       |     |
| 벽동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 사천시 신벽동 248-1      |     |
| 백운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 사천시 백천동 212-4      |     |

# 사 천 시 공 보

제275호(14)

[별지 제1호서식]

##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신청서(제6조제2항 관련)

|             |       |  |
|-------------|-------|--|
| 신<br>청<br>인 | 업 체 명 |  |
|             | 대 표 자 |  |
|             | 영업소재지 |  |
|             | 등록업종  |  |
|             | 등록부문  |  |

「사천시 공공하수도 위탁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천시 공공하수도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사 천 시 장 귀하

- 첨부서류 :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 : 2부.  
2. 사업수행능력서 : 10부  
3. 가격입찰서 : 1부

# 사 천 시 공 보

제275호(15)

## 규 칙

### 사천시 규칙 제489호

사천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조례·규칙심의회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5월 6일

### 사 천 시 장 정 만 규

#### 사천시 조례·규칙심의회규칙 일부개정규칙

사천시 조례·규칙심의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사천시 조례·규칙심의회규칙”을 “사천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규칙”으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사천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구성)** ① 사천시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의장 1명, 부의장 1명 및 위원으로 구성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275호(16)

② 심의회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부시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본청의 국장, 직속기관의 장, 담당관, 본청의 국 주무과장, 정보법무과장, 도시과장으로 한다. 다만, 제3조제3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경우에는 자치단체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변호사·대학교수 및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서 시장이 위촉하는 5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조제1호와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시 의회에 제출하는 조례안
5. 예산안·결산안 그 밖에 시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시장이 심의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천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제2조의 순위에 따른 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의안은 늦어도 그 의안을 상정할 심의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정보법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의회에서 의결·이송된 의원발의 조례안 및 수정의결된 조례안은 소관사무의 실·과·소장이 주요내용과 「지방자치법」에 따른 재의요구 여부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제13조 중 “1인” 을 “1명” 으로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수당 등)** 제2조제2항의 단서에 따라 심의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사천시 위원회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 사 천 시 공 보

제275호(17)

수당,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275호(18)

[별지 제3호서식]

|            |
|------------|
| 심의회 의장(시장) |
|            |

## 사천시조례·규칙심의회 회의록

|      |  |
|------|--|
| 일 시  |  |
| 장 소  |  |
| 참석위원 |  |
| 의 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 :                    건</li> <li>  · 조 례 안 :            건</li> <li>  · 규 칙 안 :            건</li> <li>  · 심의보고안 :        건</li> </ul> |
| 회의내용 | 별지 기재와 같음  |
| 근거법조 | ○ 「사천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규칙」 제14조   |

우리 심의회의 제        차 회의록을 위와 같이 작성함

년    월    일

사천시조례규칙심의회

간사    법무업무담당주사        (인)

# 사 천 시 공 보

제275호(19)

## 사천시 규칙 제490호

사천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5월 6일

## 사 천 시 장 정 만 규

###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 중 “제11조제1항제2호”를 “제7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제11조”를 “제7조”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제20조제1항”을 “제10조제1항”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제27조”를 “제24조”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제25조”를 “제22조”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16조제2항”을 “제12조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25조제1항제5호”를 “제22조제1항제5호”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275호(21)

## 훈 령

### 사천시 훈령 제246호

사천시 소속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 세부지침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11년 5월 6일

### 사 천 시 장 정 만 규

### 사천시 소속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 세부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사천시 소속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 고발대상과 절차를 규정하여 이를 엄정히 이행토록 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사천시 소속 공무원(퇴직자 포함 및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소속 공무원”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관장이란 시장을 말한다.
2. 기관이란 사천시를 말한다.

**제4조(고발대상)** 고발대상은 소속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지방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그 밖에 개별 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와 그와 관련된 민간인의 범죄행

# 사 천 시 공 보

제275호(22)

위를 포함한다.

**제5조(범죄보고)** ① 사천시의 부서책임자 또는 감사담당자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소속 공무원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 또는 감사책임관(행동강령책임관을 포함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부서책임자란 범죄행위를 발견한 소속 공무원의 직상급 책임자를 말한다.

**제6조(고발주체)** 기관의 장 또는 감사책임관은 제4조에 따른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하거나 제5조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및 이 지침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제7조(고발여부의 결정)** 각급 기관의 장은 범죄의 고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그 정도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되, 특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욱 엄정히 처리하여야 한다.

1.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경우  
2. 공금횡령 등 직무와 관련한 부당 이득 또는 재물취득과 관련된 범죄의 경우.  
단,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

가. 횡령금액이 200만원(누계금액) 이상인 경우

나. 횡령금액을 전액 원상회복하지 않은 경우

다. 최근 3년 이내에 횡령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 다시 횡령을 한 경우

3. 부당한 행정행위를 수반한 범죄를 저질러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 경우

4. 범죄내용의 파급개연성이 크고 수사시 비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 말소기간 이내에 다시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를 행한 경우

6. 그 밖에 범죄의 횡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고발시기 및 절차)** ① 고발의 시기는 범죄행위 사실을 확인한 즉시 고발함을

# 사 천 시 공 보

제275호(23)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범죄행위자가 사실관계를 부인할 경우에는 조사결과 증빙자료에 의하여 횡령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할 충분한 사유가 있을 경우 고발한다.

② 고발은 기관장의 명의로 고발장(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

**제9조(고발처리상황 관리)** ① 감사책임관은 고발한 범죄혐의사실의 요지 및 처리내용 등을 고발처리상황(별지 제2호서식)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고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범죄혐의사실의 요지 및 고발을 아니하는 사유를 기관장의 결재를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감사책임관은 이 지침에 따라 고발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으로 범죄혐의사실의 요지를 작성하여 기관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그 결과를 추후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묵인행위에 대한 조치)** 각급 기관의 장은 직무와 관련하여 발견한 범죄사실을 정당한 사유없이 고발하지 아니하고 이를 묵인한 때에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아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준용규정)** 그 밖에 이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 「지방공무원법」,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국무총리 훈령 제305호) 및 「사천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등을 준용한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지침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275호(24)

【별지 제1호서식】

고 발 장

1. 피고발인

- 성 명 :
- 주 소 :
- 근무처 :
- 주민등록번호 :

2. 피의건명 :

3. 피의사실

- 
- 
-

# 사 천 시 공 본

제275호(25)

| 고 발 처 리 상 황 부   |             |     |                   |         |         |         |             |       |         |         |         |     |  |
|-----------------|-------------|-----|-------------------|---------|---------|---------|-------------|-------|---------|---------|---------|-----|--|
| 번 호             | 인 적 사 항     |     |                   | 고 발 일 자 | 고 발 관 서 | 수 사 기 관 | 범 죄 혐 의 내 용 | 검 살 청 |         | 범 원     |         | 결 재 |  |
|                 |             |     |                   |         |         |         |             | 일 자   | 처 분 내 용 | 판 결 일 자 | 판 결 내 용 |     |  |
| 비 위 험 의 당 시 소 속 | 고 발 당 시 소 속 | 직 급 | 성 명<br>주민 등 록 번 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2호서식】



# 사 천 시 공 보

제275호(27)

## 공 고

사천시 공고 제2011-249호

### 도로의 노선지정에 관한 공고

농어촌도로정비법 제9조제5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0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도로의 노선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21일

### 사 천 시 장

#### 1. 도로의 노선지정 내역

| 읍면 | 도로의 종류 | 노선명 | 노선 번호 | 도로구간        |               | 총연장 (km) | 주요 경과지 | 개발계획      |           | 지정 사유         |
|----|--------|-----|-------|-------------|---------------|----------|--------|-----------|-----------|---------------|
|    |        |     |       | 기점          | 종점            |          |        | 도로 너비 (m) | 포장 너비 (m) |               |
| 용현 | 농어촌 도로 | 석온선 | 101   | 용현면 온정리 151 | 용현면 온정리 667-2 | 0.54     | -      | 8.0       | 6.5       | 농어촌 도로정비사업 시행 |

####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가. 도시관리계획(교통시설 : 도로) 결정조서

| 구분 | 규 모 |    |    |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고 |
|----|-----|----|----|--------|-------|--------|-------------|---------------|-------|--------|--------|----|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             |               |       |        |        |    |
| 신설 | 소로  | 2  | A  | 8      | 국지 도로 | 540    | 용현면 온정리 151 | 용현면 온정리 667-2 | 일반 도로 | -      |        |    |

# 사 천 시 공 보

제275호(28)

나. 도시관리계획(교통시설 : 도로) 결정 사유서

| 변경전 도로명 | 변경후 도로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
| -       | 소로<br>2-A호선 | 도로신설<br>L=540.0m, B=8.0m | 농어촌도로 용현101호선 노선지정에<br>따른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

### 3.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사천시 용현면 온정리 지내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2-A호선)사업

2) 사업의 명칭 : 석계~용정간 도로 확·포장공사

다. 사업시행 연장 및 폭원 : 도로 확·포장 L=540m, B=8.0m

라. 사업시행자 주 소 :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501번지

성 명 : 사천시장

마. 사 업 기 간 : 2011. 2. ~ 2012. 12. 30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조서 ·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서 : 첨부

첨부 :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1부.

# 사 천 시 영 편

제275호(29)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영원권번호 | 소재지     | 지번    | 면적(m <sup>2</sup> ) |        | 토지소유자 |                            | 관계인               |   |  | 비고 |                  |
|-------|---------|-------|---------------------|--------|-------|----------------------------|-------------------|---|--|----|------------------|
|       |         |       | 지목                  | 면적     | 지분    | 소                          | 소                 | 주 | 소  |    | 권리의 종류 및 내용      |
| 1     | 용현면 온정리 | 836-1 | 전                   | 19,045 | 750   | 국 (건설부)                    | 국 (건설부)           |   |  |    |                  |
| 2     | 용현면 온정리 | 151   | 도                   | 322    | 322   | 국 (농림수산부)                  | 국 (농림수산부)         |   |  |    |                  |
| 3     | 용현면 온정리 | 149   | 구                   | 1,411  | 151   | 국 (농림수산부)                  | 국 (농림수산부)         |   |  |    |                  |
| 4     | 용현면 온정리 | 67-5  | 수                   | 70     | 70    | 국 (건설교통부)                  | 국 (건설교통부)         |   |  |    |                  |
| 5     | 용현면 온정리 | 67-3  | 답                   | 245    | 245   | 조용민                        | 사천시 용현면 송지리 593   |   |  |    |                  |
| 6     | 용현면 온정리 | 67-2  | 답                   | 2,609  | 32    | 김기문                        | 하동군 진교면 진교리 482   |   | 창원시 비림동 17-4-302 부천시 월마구 상동 445 풍동산 1905-404 |    | 근저당 설정<br>근저당 설정 |
| 7     | 용현면 온정리 | 67-1  | 답                   | 3,244  | 202   | 이 석                        | 사천시 용현면 온정리 547   |   |  |    |                  |
| 8     | 용현면 온정리 | 55-3  | 수                   | 596    | 50    | 국 (건설부)                    | 국 (건설부)           |   |  |    |                  |
| 9     | 용현면 온정리 | 63-1  | 수                   | 1,070  | 92    | 한국농림발전(주)의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67 |                   |   |  |    |                  |
| 10    | 용현면 온정리 | 155   | 도                   | 1,092  | 1,092 | 국 (농림수산부)                  | 국 (농림수산부)         |   |  |    |                  |
| 11    | 용현면 온정리 | 64-10 | 답                   | 543    | 109   | 이 석                        | 사천시 용현면 온정리 547   |   |  |    |                  |
| 12    | 용현면 온정리 | 152   | 구                   | 4,934  | 992   | 국 (농림수산부)                  | 국 (농림수산부)         |   |  |    |                  |
| 13    | 용현면 온정리 | 64-8  | 답                   | 932    | 79    | 이문수                        | 사천시 용현면 온정리 583   |   | 용현읍철철동조립                                     |    | 근저당권 설정          |
| 14    | 용현면 온정리 | 64-7  | 답                   | 1,917  | 207   | 이문수                        | 사천시 용현면 온정리 583   |   | 용현읍철철동조립                                     |    | 근저당권 설정          |
| 15    | 용현면 온정리 | 64-6  | 답                   | 538    | 58    | 신종근                        | 사천시 용현면 석계리 325-1 |   |  |    |                  |

# 사 전 시 영 편

제275호(30)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        |                     |       |      |           |                                      |     |        |           |                    |           |             |
|--------------------|---------|--------|---------------------|-------|------|-----------|--------------------------------------|-----|--------|-----------|--------------------|-----------|-------------|
| 일련번호               | 소재지     | 지번     | 면적(m <sup>2</sup> ) |       |      | 토지소유자     |                                      |     | 관계인    |           |                    | 비고        |             |
|                    |         |        | 지목                  | 공분상면적 | 권입면적 | 점면도상면적    | 주 소                                  | 주 소 | 점면도상면적 | 주 소       | 주 소                |           | 권리의 종류 및 내용 |
| 16                 | 용현면 온정리 | 64-5   | 답                   | 1,888 | 198  | 최복남       | 김해시 동상동 340-8                        |     |        |           |                    |           |             |
| 17                 | 용현면 온정리 | 64-4   | 답                   | 772   | 51   | 김미영       | 진주시 근상면 각서리 100<br>금신동 안남은빌라 116-302 |     |        |           |                    |           |             |
| 18                 | 용현면 온정리 | 64-3   | 답                   | 1,283 | 120  | 이상열 외 1인  | 사천시 용현면 온정리 585                      |     |        |           |                    |           |             |
| 19                 | 용현면 온정리 | 64-2   | 답                   | 1,864 | 214  | 이강준 외 2인  | 사천시 용현면 온정리 545                      |     |        | 진주세무 소    |                    | 이강준 지분 압류 |             |
| 20                 | 용현면 온정리 | 64-1   | 답                   | 2,588 | 326  | 최진호       | 사천시 용현면 석계리 157                      |     |        | 용현농협 협동조합 | 사천시 용현면 송지리 201-11 | 근저당권 설정   |             |
| 21                 | 용현면 온정리 | 836-16 | 전                   | 340   | 340  | 국 (건설부)   |                                      |     |        |           |                    |           |             |
| 22                 | 용현면 온정리 | 147    | 답                   | 562   | 69   | 최옥래       | 사천시 용현면 온정리 542                      |     |        |           |                    |           |             |
| 23                 | 용현면 온정리 | 835-16 | 도                   | 1,546 | 327  | 국 (건설교통부) |                                      |     |        |           |                    |           |             |
| 24                 | 용현면 온정리 | 143-2  | 답                   | 112   | 112  | 이종민       |                                      |     |        |           |                    |           | 미등기         |
| 25                 | 용현면 온정리 | 143-1  | 답                   | 1,392 | 431  | 최종숙       | 진주시 평거동 191-1<br>들말동 안남은 102-603     |     |        |           |                    |           |             |
| 26                 | 용현면 온정리 | 142-2  | 답                   | 69    | 69   | 이강준       | 사천시 용현면 온정리 545                      |     |        | 용현농협 협동조합 | 사천시 용현면 송지리 201-11 | 근저당권 설정   |             |
| 27                 | 용현면 온정리 | 142-1  | 답                   | 2,473 | 178  | 성덕기 외 1인  | 진주시 주안동 407-1<br>금호석류마을 106-201      |     |        |           |                    |           |             |
| 28                 | 용현면 온정리 | 169-2  | 답                   | 60    | 60   | 이종승       | 사천시 용현면 온정리 585                      |     |        |           |                    |           | 미등기         |
| 29                 | 용현면 온정리 | 169-1  | 답                   | 3,845 | 207  | 최재승 외 1인  | 사천시 용현면 온정리 585                      |     |        |           |                    |           |             |
| 30                 | 용현면 온정리 | 141-2  | 답                   | 21    | 21   | 이규순       |                                      |     |        |           |                    |           | 미등기         |

# 사 전 시 영 편

제275호(31)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       |    |                     |       |     |           |                                 |     |          |     |          |     |
|--------------------|---------|-------|----|---------------------|-------|-----|-----------|---------------------------------|-----|----------|-----|----------|-----|
| 일련번호               | 소재지     | 지번    | 지목 | 면적(m <sup>2</sup> ) |       |     | 성명 또는 명칭  | 토지소유자                           |     |          | 관계인 |          | 비고  |
|                    |         |       |    | 지공분할면적              | 면적    | 면적  |           | 주 소                             | 주 소 | 성명 또는 명칭 | 주 소 | 성명 또는 명칭 |     |
| 31                 | 동현면 온정리 | 141-1 | 답  | 134                 | 134   | 134 | 최부래       | 사천시 용현면 온정리 542                 |     |          |     |          |     |
| 32                 | 동현면 온정리 | 835-1 | 도  | 136                 | 136   | 136 | 국 (건설교통부) |                                 |     |          |     |          |     |
| 33                 | 동현면 온정리 | 141-4 | 답  | 19                  | 19    | 19  | 이규순       |                                 |     |          |     |          | 미등기 |
| 34                 | 동현면 온정리 | 141-3 | 답  | 41                  | 41    | 41  | 국 (건설교통부) |                                 |     |          |     |          |     |
| 35                 | 동현면 온정리 | 175-4 | 답  | 26                  | 26    | 26  | 국 (국토해양부) |                                 |     |          |     |          |     |
| 36                 | 동현면 온정리 | 175-1 | 답  | 2,600               | 2,600 | 212 | 국 (건설교통부) |                                 |     |          |     |          |     |
| 37                 | 동현면 온정리 | 844-1 | 재  | 210                 | 176   | 176 | 국 (건설부)   |                                 |     |          |     |          |     |
| 38                 | 동현면 온정리 | 175-2 | 도  | 4,599               | 67    | 67  | 국 (건설부)   |                                 |     |          |     |          |     |
| 39                 | 동현면 온정리 | 667-1 | 도  | 61                  | 61    | 61  | 국 (건설부)   |                                 |     |          |     |          |     |
| 40                 | 동현면 온정리 | 667-4 | 답  | 1                   | 1     | 1   | 국 (건설교통부) |                                 |     |          |     |          |     |
| 41                 | 동현면 온정리 | 836-2 | 재  | 555                 | 6     | 6   | 국 (건설부)   |                                 |     |          |     |          |     |
| 42                 | 동현면 온정리 | 667-2 | 답  | 1,328               | 113   | 113 | 문경선       | 부산시 연제구 연산동 387-1 한양이코프 51-1203 |     |          |     |          |     |
| 43                 | 동현면 온정리 | 844   | 재  | 1,292               | 4     | 4   | 국 (건설부)   |                                 |     |          |     |          |     |
| 44                 | 동현면 온정리 | 835-1 | 도  | 1,546               | 21    | 21  | 국 (건설교통부) |                                 |     |          |     |          |     |



# 사 천 시 공 보

제275호(33)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